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52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규정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27.
3. 회 부 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라 함)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

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 각각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충전시설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하며(안 제21조의2 신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책임보험 가입) 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이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라 한다)는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책임을 지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

현행	개정안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10. (생략) ② · ③ (생략)	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u>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u> 3.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화재 및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사고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충전시설은 공동주택이나 대형마트 등 인구가 밀집한 시설에 주로 위치하고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경우도 많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¹⁾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 체계는 물론 사후적인 보상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장소는 '22년 12월 기준 공동주택시설(약 75%)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지하 주차장에서는 열과 연기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피해 규모가 커짐.

현재는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② 사업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함.

그런데, 전기시설에 관련된 사고는 특성상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고²⁾ 가능하더라도 조사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를 보상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향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빠르게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 사고는 사전 점검 및 안전관리만으로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려우므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한 사후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재난

2) 많은 사례에서 전기자동차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데 전기자동차 화재·폭발 사고의 특성상 전기자동차가 전소된 사례가 많아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자동차의 결함인지, 충전시설의 결함인지,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인지 또는 전기자동차 소유주의 부주의인지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에 대비한 특별안전점검, 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기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³⁾을 규정한 법률이므로,

전기설비 사고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을 「전기안전관리법」에서 다루기보다는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복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충전시설과 유사한 시설인 주유소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취약시설에 해당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가 부여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58

3) 「전기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① 삭제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삭제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삭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 제84조의6, 제84조의7 및 제88조의3에서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3]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차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